

[별표 1] <개정 2017. 5. 18.>

### 주요시설물 관리기관(제5조 관련)

구 분		시설물유지관리 내역	관리자
도로 (차도· 보도) 및 도로 시설물	서울 특별시도	○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,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	안전총괄본부장
		○ 차도관리(자전거전용도로·자전거전용차로 포함) ○ 도로시설물(한강교량,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 제외)	도로사업소장
		○ 보도관리(측구,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) ○ 차도 및 보도의 청소(낙하물 포함)	자치구청장
	자동차 전용도로	○ 차도 및 보도 관리(청소 포함) ○ 녹지 및 가로수	안전총괄본부장
		○ 도로시설물	안전총괄본부장
도 로 부 속 물	공동구	○ 공동구	안전총괄본부장
	지하보도 및 보도육교	○ 서울특별시도(자동차전용도로 포함)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(생태통로 포함)	자치구청장
	가로등·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	○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·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	안전총괄본부장
		○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	도로사업소장
		○ 서울특별시도의 가로등 ○ 서울특별시도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	자치구청장
	나머지 도로부속물 (방호울타리·중앙분리대·과 속방지시설· 미끄럼방지시설· 충격흡수시설· 낙석방지망· 절개지·도로 옹벽· 방음벽·맨홀 등)	○ 자동차전용도로(차도 및 보도)의 나머지 도로부속물	안전총괄본부장
		○ 서울특별시도(차도)의 나머지 도로부속물(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)	도로사업소장
		○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	자치구청장
		○ 서울특별시도(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)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도 로부속물(보도의 자전거전용도로·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부속물 포함)	자치구청장
	○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나머지 도로부속물	도로사업소장	
교 통 관 리 시 설	지능형 교통체계	○ 교통정보의 수집, 제어, 가공, 제공시스템 및 관련 설비와 긴급 연락시설	도시교통본부장
	버스전용 차로 단속 시스템	○ 버스전용차로(중앙 및 가로변) 유·무인 단속시스템	도시교통본부장
	도로표지	○ 문안검토	도시교통본부장
		○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	안전총괄본부장
		○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	도로사업소장
		○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	자치구청장
교 통 안 전 시 설	신호기· 안전표지	○ 지침운용,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	도시교통본부장
		○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	안전총괄본부장
	신호기· 안전표지	○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○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○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	도로사업소장
		○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	자치구청장

구 분		시설물유지관리 내역	관리자
교통 안전 관련  도로 부속물	시선유도표지·시선유도봉· 갈매기표지·도로반사경·차 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, 교통섬 등	○ 지침운용,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	도시교통본부장
		○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	안전총괄본부장
		○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○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(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·교통섬 제외, 중앙 및 환승정류소 보도관리 포함)	도로사업소장
		○ 서울특별시도(보도)의 차량진입금지시설, 교통섬	자치구청장
하 천 시 설	한강	○ 한강의 제방, 호안, 수제, 보, 관측시설 등 ○ (육)갑문의 구조물,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○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, 정밀안전진단 등	한강사업본부장
		○ (육)갑문의 문짝, 권양기 시설물, 통로청소, 수문개폐	자치구청장
하 수 도	국가 및 지방 하천(한강 제외)	○ 제방, 호안, 수제, 보, 관측시설 등 ○ 빗물펌프장(유수지 포함)의 구조물,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○ 호안블록, 옹벽, 도수로, 우수토실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 ○ 수문의 구조물·문짝·권양기 등 관련 시설	자치구청장
	국가 및 지방 하천 이외 하천	○ 갑문의 구조물·문짝·권양기·통로청소·수문개폐 등 ○ 갑문의 조명시설 및 진입·진출로 시설 ○ 그 밖의 하천시설	
	공공하수 처리시설	○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	
하 수 도	차집관거	○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	물재생센터소장 (위탁업체대표)
	하수관거	○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	자치구청장
복개 구조물	하천복개구조물	○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	도로사업소장 또는 자치구청장
		○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	주 기능별 설치사용자
<p>비 고 :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</p> <p>가. 청계천 제외지(堤外地)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(開口部) 수문 : 물순환안전국</p> <p>나. 청계천로(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) 천변 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: 안전총괄본부장</p> <p>다. 하천과 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하천과 공원 관리자를 자전거도로 관리자로 함</p> <p>라. &lt;삭 제&gt;</p> <p>참고1) "차도"란 보·차도 경계측구를 제외한 포장측을 말함.</p> <p>참고2) 도로부속물의 "절개지"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절토된 부분의 비탈면을 말함.</p>			